

부속서 I
에콰도르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유보목록은 제8.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그 당사국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8.2조(내국민 대우)

나. 제8.3조(최혜국 대우)

다. 제8.4조(시장접근), 또는

라. 제8.5조(현지주재)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관련의무**는 제3항에 규정된 대로, 제8.6조제1항가호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라. **정부수준**은 유보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마.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바. **유보내용**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의 해석에서,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해야 할 것이다.

4. 제8.6조제1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8.6조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 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다.

5. 에콰도르의 경우, **국내법인**은 국민 그리고/또는 외국인 투자로 에콰도르 법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

6. 에콰도르의 경우, **외국인**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7. 에콰도르의 경우, 주식회사는 회사법 제6절 “주식회사(Compañía Anónima)”에 따

라 구성된 실체를 지칭한다.

1. 분야 통관 대리인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통관 대리인 및 보조인의 활동을 규제하는 규정 제2장(통관 대리인)
제6조, 제7장(통관 대리인의 보조인) 제41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통관 대리인과 통관 대리인의 보조인이 전문직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
해서는 에콰도르 내 주소가 요구된다.

2. 분야 법률 서비스¹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사법기능 기본법 제7편(변호사) 제1장(사건 지원 변호사) 제324조 · 제326조 · 제327조, 제3장(법학, 법 및 법과학 학부 졸업생을 위한 예비 전문직 실무) 제332조 · 제339조 · 제34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외국 변호사는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학위가 법으로 규정된 조건에 따라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그 국가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GATS상 에콰도르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98, GATS/SC/98/Suppl.1 및 GATS/SC/98/Suppl.2)에 규정된 외국 법률 및 국제법에 대한 자문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분야 전문직 서비스

하위분야 공증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사법기능 기본법 제6편(사법기능의 보조 기관) 제1장(공증인) 제299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공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에콰도르인이어야 하고 정치 참여의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

4. 분야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
하위분야	<p>구매 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않는,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화물 운송 차량에 관한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p> <p>구매 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않는,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그 밖의 육상 운송 장비에 관한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p>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육상 운송, 교통 및 도로 안전 기본법 제5편(육상 운송의 권한) 제2장(행정 체제) 제2절(차량 임대 및 리스 회사) 제77.a조, 제4절(차량 임대 및 리스 회사에 대한 행정 제재의 적용) 제77.e조·제77.f조·제78조</p> <p>차량 임대 또는 리스 회사의 운영에 대한 규정 제2편(차량 임대 회사의 인가 및 운영) 제2장(법인 목적) 제5조·제6조</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회사의 주된 목적이 육상 운송 차량의 임대 또는 리스인 국내법인만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회사는 다음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p> <p style="margin-left: 40px;">가. 운전자를 동반하여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회사에 임대된 차량은 운송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지 않고 차량을 임대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서만 독점적으로 사람과 상품의 이동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p>

나. 공공 또는 상업 운송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

5. 분야 통신 서비스²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에콰도르 공화국 헌법 제6편(개발 체제) 제5장(전략 분야, 서비스 및
 국영 기업) 제313조, 제6장(노동 및 생산) 제6절(저축 및 투자) 제
 339조, 제7편(좋은 생활 체제) 제1장(포용 및 형평성) · 제2장(생물
 다양성 및 천연자원) 제408조

 행정 기본법 제1편(행정 조직) 제3장(권한의 행사) 제74조 · 제75조
 · 제76조 · 제77조

 회사법 제1절(일반규정) · 제13절(외국 회사) 제415조

 통신 기본법 제2편(네트워크 및 통신서비스 제공) 제2장(통신서비스
 제공) 제14조 · 제15조, 제5편(권한) 제1장(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권한) 제39조, 그리고 제2장(라디오 스펙트럼의 사용 및 개발) 제55
 조, 제11편(희소 자원과 상품의 점유) 제1장(라디오 스펙트럼의 할당)
 제93조

 통신 기본법에 대한 일반규정 제3편(권한) 제2장(위임에 의한 권한
 규정) 제20조, 제7편(서비스 계약 체제) 제4장(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GATS상 에콰도르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98, GATS/SC/98/Suppl.1 및 GATS/SC/98 /Suppl.2)에 규정된 C. 통신서비스 (h)부터 (n)까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와 의무) 제59조, 제9편(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금체제) 제62조

통신 및 주파수에 대한 권한 규정 제1권(권한의 부여) 제1편(통신서비스에 대한 권한의 부여) 제1장(일반 승인형식에 따라 부여되는 권한) 제1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다음을 위하여 운영 면허가 요구된다.

- 가. 방송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통신서비스 제공
- 나. 라디오 스펙트럼 사용 또는 개발, 그리고
- 다. 통신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이러한 운영 면허를 획득하기 위하여, 자연인은 거주자여야 하고 외국인인 에콰도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운영 면허는 경제적 수요 심사의 대상이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은 고립된 비도시 지역, 도시 주변 지역 내 및 저소득 인구 집단에 보편적 통신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익이 있는 시장에서 민간 운영자의 접근과 참여를 위한 그러한 최소 자원의 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에 따라, 라디오 스펙트럼의 사용 및 개발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은 다음을 제외하고 권리금, 요금, 기여금 및 그 밖의 의무금을 지불해야 한다: 1) 운영 면허의 부여 또는 갱신을 위한 것 그리고 2) 사용 및 개발을 위하여 주파수에 대한 승인의 부여 또는 갱신을 위한 것. 그러나 공기업은 통신부가 발표한 공공 정책에 따라 사회적 성격을 가진 보편적 서비스의 의무 이행 또는 ARCOTEL(통신 규제 및 통제 기관)이 제공한 결의의 실행을 통하

여 이러한 면제를 전부 받아야 한다.

교차보조금은 구독형 방송을 포함하여, 위임에 의한 권한을 보유한 통신서비스 공급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승인에 의한 권한을 보유한 통신서비스 공급자는 헌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러한 목적상 사회적 이익의 개념을 준수하면서, 보편적 서비스의 경우에만 이러한 보조금을 적용할 수 있다.³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임에 의한 권한은 민간 통신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되고, 승인에 의한 권한은 공공 통신회사에 부여된다.

6.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커뮤니케이션 기본법 제6편(광고, 국내 제작 및 대중공연) 제2절(국내 제작) 제98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매체를 통하여 에콰도르 영역 내에 전파되는 광고는 에콰도르인 또는 에콰도르에 거주하는 외국의 자연인이 에콰도르 영역 내에서 제작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에콰도르인 또는 외국 법인이 해외에서 제작해야 한다. 이러한 외국 법인은 주식 총량의 과반수를 에콰도르 인이 소유하고, 광고 실현 및 제작을 위한 급여 대상자 명단의 최소 80퍼센트는 에콰도르 국적자로 이루어진다. 급여 대상자 명단의 이러한 비율은 전문 직서비스 계약을 포함할 것이다.

광고 제작물은 텔레비전 및 영화 광고, 라디오 광고, 정적 광고를 위한 사진 또는 광고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 밖의 시청각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7. 분야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커뮤니케이션 기본법 제7편(라디오주파수스펙트럼) 제11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통신 당국은 국가 영역 전체에 걸쳐 동일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AM 라디오 주파수 이용권 하나, FM 라디오 주파수 이용권 하나 및 텔레비전 주파수 이용권 하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AM 또는 FM 중 어느 하나의 라디오 이용권을 보유한 인은 누구든지 하나를 초과하지 않는 단파 주파수의 부여를 위한 공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8. 분야 방송

하위분야 라디오 및 무료 방송 텔레비전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커뮤니케이션 기본법 제5편(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매체) 제74조, 제7편(라디오 주파수스펙트럼) 제10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개방형 신호 매체, 라디오 및 텔레비전은 공익정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의무를 가질 것이다.

- 가. 에콰도르 대통령 또는 이 권한을 받은 집행 기능 기관이 지시한 공익에 관한 메시지를 국가 또는 지역 채널, 전부 또는 일부 소셜 미디어에서 전송한다.
- 나. 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비상 사태의 경우, 에콰도르 대통령 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당국이 지시한 메시지를 국가 또는 지역 채널에서 전송한다.
- 다. 텔레비전 교육, 문화, 건강 및 권리에 대한 권한을 가진 부처 또는 사무국이 마련한 이러한 사안에 대한 공식 프로그램에 하루에 한 시간을 할당하고, 이는 누적되지 않는다. 그리고
- 라. 공공, 민간 및 지역사회 매체의 연결을 통하여,

국가위험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기관이 선포한 적색경보와 함께, 4급, 5급 재난 및 참사로 알려진 위험한 사건의 전개 상황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비상사태 선포를 반드시 수신하지 않고도 지정된 공식 대변인의 메시지를 전송한다.

무료 방송의 경우, 라디오 스펙트럼의 34퍼센트까지 지역사회 분야에 유보될 것이며, 66퍼센트는 공공 및 민간 분야에 배정될 것이다. 공공 분야 비율은 스펙트럼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9. 분야	시청각서비스
하위분야	무료 방송 텔레비전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커뮤니케이션 기본법 제6편(광고, 국내제작 및 대중공연) 제2절(국내 제작) 제97조·제100조·제101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신호의 근원이 국내인 시청각 매체는 모든 시청자에게 적합한 일일 방송 편성표의 최소 60퍼센트를 국내 제작물로 방송할 것이다. 이 시청각 매체는 점진적으로 그 비율에 도달할 것이다. 국내 제작물은 비디오 제작물, 예술, 뮤직 비디오, 텔레비전 연속극 및 그 밖의 작가 제작물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물 및 시청각 창작물, 플롯·다큐멘터리·실험물·애니메이션 및 혼합 매체 프로그램 및 시리즈를 포함한다.

이러한 국내 콘텐츠는 독립적인 국내 제작물의 최소 10퍼센트를 포함해야 하고, 이는 그 매체의 일일 전체 방송 편성에 따라 계산된다.

시청각 작품은 에콰도르 국적의 사람 또는 국가 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최소 80퍼센트가 제작에 참여한 경우, 국내물로 여겨질 것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에콰도르인이 국외에서 제작한 작품의 경우, 동일한 비율이 적용된다.

모든 시청자에게 적합한 시간으로 명시된 일정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이의 가족 시간대에 해당하며, A 유형 편성물이 방송된다.

10. 분야	시청각서비스
하위분야	무료 방송 및 구독형 텔레비전
관련의무	<p>최혜국 대우(제8.3조)</p> <p>시장접근(제8.4조)</p>
정부수준	중앙
조치	커뮤니케이션 기본법 제2편(원칙과 권리) 제2장(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권리), 제5편(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매체), 제6편(광고, 국내제작 및 대중공연) 제2절(국내제작) 제102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프로그램 편성표 내에 에콰도르 영역으로부터 신호가 방송되는 하나 이상의 채널을 보유한 무료 방송텔레비전 매체와 오디오 및 비디오 구독형 시스템은 매년 권리를 획득하고 최소 두 편의 독립적인 국내 제작 장편 영화를 방영할 것이다.</p> <p>독립적인 국내 제작 물량이 예상 쿼터를 채우지 못한다면, 원산지 국가와의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이베로 아메리카 제작물이 그 쿼터를 채울 것이다.</p> <p>공화국 대통령이나 해당 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당국이 지시한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또는 비상 사태의 경우, 구독형 오디오 및 비디오 시스템은 국가나 지역 채널에 무료로 연결하기 위하여 그들의 프로그램 편성을 중단한다.</p> <p>구독형 오디오 및 비디오 시스템은 정보통신 규제·개발·촉진 위원회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미리 자격을 부여한 국가, 구역 및 지역 무료</p>

방송 텔레비전 채널을, 콘텐츠와 프로그램 편성의 품질을 고려하여 통신 당국이 수립한 기술 조건을 충족하는 한 자신의 시스템에서 전송해야 한다.

구독형 오디오 및 비디오 시스템이 국가 영역 내에서 무료 방송 텔레비전을 전송하는 경우 텔레비전 방송국 또는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재송신권(료) 지불로부터 면제될 것이며, 구독자 또는 이러한 시스템의 구독자에게 청구되지 않을 것이다.

구독형 오디오 및 비디오 시스템이 무료 방송텔레비전 신호를 전송할 때, 원래의 방송 편성은 존중될 것이고, 방송 편성 소유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를 변경하거나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11.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위분야	라디오 방송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커뮤니케이션 기본법 제6편(홍보, 국내제작 및 대중공연) 제2절(국내 제작) 제103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라디오 방송국의 경우, 국내 제작 저널 콘텐츠 방송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거주하는 에콰도르인 실연자, 작곡가 또는 예술가가 에콰도르에서 또는 해외에서 제작, 작곡 또는 실연한 음악을 방송하기 위한 시간은 모든 편성 일정에서 방송되는 콘텐츠의 최소 50퍼센트에 해당해야 하며, 국내 음악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대로 저작권료를 지불한다.

특정 주제 또는 전문적 성격을 지닌 방송국은 음악 콘텐츠의 50퍼센트라는 언급된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12. 분야	우편 및 메일 서비스
하위분야	우편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우편서비스 일반법 제1장(예비 규정) 제1조, 제3장(우편 서비스 및 그 권한) 제15조·제16조·제20조 우편 서비스법에 대한 일반규정 제7장(권한) 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에콰도르에서 우편서비스의 제공은 허가 또는 권한을 통하여 각 기관의 승인에 따라 수행될 것이다. 외국 자연인 또는 외국 법인은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국가 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이전 단락에 언급된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신속 택배 또는 택배, 항공·육상·해상 또는 하천 운송으로 제공되는 우편환, 육상 운송 회사를 통한 소포 수송, 우편업무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것

이 유보항목은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포함된 우편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13. 분야	선불 보건의료 서비스 ⁴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종합 선불 보건의료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는 회사와 보험의료지원보장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규제하는 기본법 제2장(종합선불보건의료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는 회사와 보험의료지원보장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의 설립 및 기능) 제6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주식회사로 구성된 국내법인만이 선불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GATS상 에콰도르의 구체적 약속양허표(GATS/SC/98, GATS/SC/98/Suppl.1, 및 GATS/SC/98 /Suppl.2)에 규정된 병원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14. 분야	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관광업법 제2장(관광 활동 및 이를 수행하는 자) 제8조·제9조, 제6장(관광 보호 구역) 제24조 관광업법 일반규정 제2장(단일 관광업 등록) 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 제3장(임시 허가) 제52조·제53조·제54조, 제4장(연간 운영 면허) 제55조·제56조·제57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 관광객 안내 규정 제3편(관광객 안내 자격증 등록 및 취득 요건) 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자연인과 법인은 관광업 등록을 신청하고 그 운영 면허를 받기 위하여 에콰도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지역 관광객 안내 자격증 등록 및 취득을 위하여, 활동을 수행할 마을에서의 최소 3년 간의 거주에 대한 증명이 요구된다. 에콰도르의 자연 구역, 수상 및 육상 보호 구역, 국립 공원 및 해양 공원에서 관광객 운영은 국내 선박소유자 및 운영자에 유보될 것이고,

이에 상응하는 승인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

법인인 경우, 에콰도르 국적이거나 에콰도르 내에 법적으로 주소를 둔 외국회사의 지점이어야 한다.

국립 공원과 해양 보호 구역에서 운영되는 수상 선박은 에콰도르 국적의 선박이 될 것이다.

15. 분야	박물관 관련 서비스 및 보존 서비스
하위분야	고고학 및 고생물학 현장 또는 구역에 대한 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문화 기본법 일반규정 제5편(국가 문화 제도) 제4장(국립 문화유산 연구소) 제3절(문화유산 특별 체제) 제71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에콰도르 국립문화유산연구소(스페인어 약자 INPC)는 고고학 및 고생물학 현장이나 구역의 관리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 국내 또는 외국의 학술 또는 교육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학술 또는 교육 기관은 국가 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16. 분야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항공 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항공법 제2편(비행장 및 공항 인프라) 제2장(건설 및 운영) 제3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비행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승인은 에콰도르인인 자연인 또는 에콰도르에 주소를 둔 법적 실체에만 부여될 것이다.

17. 분야	항공 운송
하위분야	항공 업무 및 관련 활동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항공법 제8편(양허 및 운영 허가) 제1장(일반사항) 제109조</p> <p>항공 업무 서비스, 관련 활동 및 민간 항공 서비스에 대한 운영 허가에 관한 규정 제1장(범위 및 정의) 제1조, 제2장(운영 허가 취득 요건) 제5조</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국내법인만이 항공 업무 또는 관련 활동에 대한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p> <p>항공 업무 서비스 및 관련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항공 촬영, 화재진압, 광고비행, 글라이더 견인, 낙하산 강하, 외부 화물 운송, 항공 순찰 및 감시, 훈증 소독, 항공살포, 포식종 통제, 강우 통제, 항공관광, 항공 인력을 위한 기초 훈련 학교, 항공 훈련 센터 및 항공기 제조 및 조립</p>

18.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항공 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항공법 제4편(항공 인력) 제1장(항공 기술 인력) 제74조·제75조·제76조 민간항공법 제4편(일반규정) 제45조·제46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⁵</u>

에콰도르 회사에서는, 에콰도르 국적의 항공 기술 인력만이 국가 내에서 보수를 받는 항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항공 서비스의 수행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에콰도르인 기술 인력에 대한 외국인 강사의 고용이 승인될 것이다. 민간 항공 총국 또는 권한 있는 것으로 지정된 당국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이러한 승인을 부여할 것이고, 필요가 지속되고 검증된 경우 동일한 기간에 대하여 갱신될 수 있다. 이러한 기한 내에, 고용된 인력은 자신을 대체할 에콰도르인 인력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조건은 국가 내에서 항공 활동을 수행하도록 법적으로 승인을 받은 모든 자연인에게 적용된다.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는 제8.1조제4항다호1목, 4목 및 5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에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에콰도르에 운영 및 유지보수 센터를 보유한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인 국민과 외국인은 각 경우에 맞게 조종사, 탑승 승무원, 기술자, 전문가 및 행정인력 서비스를 위하여 에콰도르 시민을 고용할 것이다.

민간 항공 총국은 이 목적을 위하여 승인되고 이용 가능한 에콰도르 기술 인력이 없음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만, 이전 단락에 명시된 기능에 대한 외국인 인력의 고용을 승인할 수 있다.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각 사례에 대하여 항공 당국이 정한 기간 내에 외국인 인력을 대체할 에콰도르 인력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19. 분야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도로 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육상 운송, 교통 및 도로 안전 기본법 제2권(자동차 육상 운송) 제2편(운송 서비스) 제1장(육상 운송 서비스의 등급) 제55조·제56조·제57조·제58조·제59조, 제5편(육상 운송의 권한) 제1장(일반사항) 제72조·제73조·제73.a조·제74조·제75조·제76조 육상 운송, 교통 및 도로 안전 기본법에 대한 규정 제2편(지상 운송 서비스) 제1장(지상 운송 회사 및 협동조합의 구성), 제8장(지상 운송의 권한) 제1절(일반 정보) 제65조·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 제2절(권한 취득을 위한 요건) 제72조·제73조·제74조·제7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모든 형태의 도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권한이 요구될 것이다. 도로 운송 권한은 권한 있는 당국이 부여하게 될 운영 계약, 운영 허가 및 승인이다. 그러한 권한은 경제적 수요 심사의 대상이다. 회사의 경우, 운송 사업자는 민간 유한 회사, 주식 회사 또는 혼합 경제 회사로 배타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자연인의 경우, 영구 거주가 요구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로 운송 형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국제운송,

국내운송, 국경 간 운송, 상업운송 및 자가 운송

20. 분야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해상운송 서비스 내륙수로 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해상 및 하천 운송 일반법 제7조 d) 수중 공간에서의 항해, 안전 관리, 해양 및 하천 보호 기본법 제2편(항해) 제4장(선원, 어민 및 하천 인력의 양성 및 훈련) 제64조·제75조 해상 활동에 관한 규정 제10장(상선 인력) 제102조·제103조, 제11장(상선 인력 등록) 제110조 국립해양국(DIRENA) 결의 제017/17호(선박의 최소 보안 요원과 관련된 원칙) 제2조 결의 제MTOP - SPTM - 2016 - 0102 - R호(선원의 자격기준, 서류의 등록에 대한 기준) 제7장(외국인) 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에콰도르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에콰도르에 주소를 둔 법인만이 에콰도르 국적의 선박과 해군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

에콰도르 국적의 선장이 에콰도르 국적의 선박과 해군 선박을 지휘해야 하며, 선원은 대부분 에콰도르인이어야 한다. 선박의 관리에 전문화된 기능이 요구되고 자격을 갖춘 에콰도르인 가용 인력이 부족한 경우, 국립해양국(DIRNEA) 또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지정된 당국은 정당한 기술적 또는 운영상의 이유로 외국인 인력의 고용을 승인할 것이다.

외국인의 지휘를 받을 수 있는 요트 또는 레크리에이션 보트(다만, 그 소유주가 외국인이며 국립해양국(DIRENA) 또는 권한 있는 것으로 지정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제외하고, 에콰도르 국적의 선박은 에콰도르 국적 선장의 지휘만을 받을 것이다.

최소 보안요원 배치문서에 따라 기능을 맡기 위하여, 제휴 계약, 6개월을 초과하는 용선 계약에 따라, 또는 국유화 과정에 있는 에콰도르 해역을 운항하는 총 톤수가 50GRT 이상인 외국 국적 선박에는 에콰도르인 해양 인력이 50퍼센트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용선 계약에 따른 선박의 경우, 7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선장은 외국인일 수 있다.

21. 분야 해상 및 하천 운송

하위분야 선박 대리인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해상 및 하천 운송 일반법 제7조 d)

수중 공간에서의 항해, 안전 관리, 해양 및 하천 보호 기본법 제2편(항해) 제4장(선원, 어민 및 하천 인력의 양성 및 훈련) 제75조

해상 활동에 관한 규정 제12장(대리인, 해운회사 및 항만 운영자) 제115조·제116조, 제13장(수상운송) 제130조

결의 제MTOP-SPTM-2016-0126-R호[제12장(해상 활동에 관한 규정-선박 대리인)의 올바른 적용에 대한 규칙] 제3조

결의 제MTOP-SPTM-2016-0111-R호[제12장(해상 활동에 관한 규정-선주)의 올바른 적용에 대한 규칙]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에콰도르에 거주하는 자연인 및 주소를 둔 법인만이 선박 대리인으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항만해양하천운송청 또는 권한 있는 것으로 지정된 당국이 부여하는 승인이 필요하다

22. 분야	해상 및 하천 운송
하위분야	항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해상 활동에 대한 규정 제12장(대리인, 해운회사 및 항만 운영자), 제13장(수상 운송)</p> <p>결의 제MTOP-SPTM-2016-0060-R호(에콰도르에서의 항만 서비스를 규제하는 규칙) 제4조·제5조·제6조</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국내법인만이 항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은 각각 등록을 취득해야 한다.</p>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선박 또는 해군 선박, 화물 및 승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 지역에서 제공되는 전문적 기술 서비스에 적용된다.</p>

23. 분야	해상운송
하위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해상 활동에 대한 규정 제13장(수상 운송) 제125조</p> <p>수출 및 수상 운송 촉진법 제2장(수상 운송) 제16조</p> <p>결의 제MTOP-SPTM-2021-0034-R호 제9장(국가 수역을 향해 하는 에콰도르 국적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을 위한 국가 및 국제 교통 허가 발급, 내부 궤적 및 예외적 인가에 관한 해양 활동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위한 규정, 제6장(외국 국적 선박을 위한 운송 서비스 제공에 대한 예외적 인가)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승객과 화물의 내륙 수상 운송은 에콰도르 국적 선박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유보된다.</p> <p>승객과 화물의 내륙 수상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외적 인가가 외국 국적 선박에 부여될 수 있다.</p>

24. 분야	해상운송
하위분야	탄화수소 적재, 하역 및 보관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시장접근(제8.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수출 및 수상 운송 촉진법 제2장(수상 운송) 제14조 · 제1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탄화수소의 적재, 하역 및 보관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것은 제외하고, 국내회사, 에콰도르 국가 기업 또는 에콰도르 국가가 주식 자본의 최소 51퍼센트를 참여하는 혼합형 해운회사에 배타적으로 할당된다.

25. 분야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국제 해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시장접근(제8.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수출 및 수상 운송 촉진에 관한 법(관보 제901호, 1992. 3. 25.) 제2장(수상 운송) 제13조·제14조 해상 활동에 대한 규정 제13장(수상 운송) 제120조·제121조·제122조·제123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에콰도르 착발의 국제 해상운송에서 실질적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된다. 실질적 상호주의는 외국이 에콰도르 국적 선박이나 국내 해운회사가 임대 또는 운영하는 선박에 부여하는 접근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외국 선박이 에콰도르가 생성하는 수입 및 수출 화물의 운송에 대해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항만해양하천운송청은 제3국이 에콰도르 해운회사가 소유, 임대 또는 운영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하는 경우, 제3국 국적의 회사나 선박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수출 선적에서의 자유 경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상호주의 원칙이 다른 국가에 의하여 제한되었을 때, 해당 국내 해운회사는 제한적, 배타적 또는 화물유보 조치의 채택을 요청할 수 있다.

에콰도르 해운회사가, 외국 해운회사가 소속된 국가로부터의 수입 화물을 운송하거나 제3국으로부터 그러한 국가의 수입 또는 수출 화물을 운송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경우, 외국 해운회사에 대하여 상호적 및 비례적 제한이 부과될 것이다.

제한은 다른 나라가 부과하는 화물 접근 제한에 따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외국 해운회사가 에콰도르 착발의 운항을 계속할 수 있지만, 에콰도르 해운회사와 동일한 비율로 제한됨을 의미한다.

운항 배제는 에콰도르 해운회사가 해당 국가와의 운항이나 해당 국가와 제3국 간 운항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국가에 소속된 외국 회사의 선박이 에콰도르로 입국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수반한다.